

『구미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민간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정보화마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1조)
- 조직명칭 변경 반영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6조,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
 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민간보조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, 「전자정부법」 제65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 정보화마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을 명시, 정보화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